

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를 위한 명절 위문비 등 지원 ○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동반자녀 양육비(입학금, 수업료 등)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30,700천원	(국비)	(사비)30,700천원
		기타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여성가족정책실	가족다문화담당관	천주환 2133-8680	최정열 2133-8696	류가영 2133-869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예산액 (A)	2023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25,933	(x-) 30,700	(x-) 4,767	(x-) 18
사회보장적수혜금(국고보조재원)	(x-) 10,700	(x-) 0	(x-) △10,700	(x-) △100
사회보장적수혜금(지방재원)	(x-) 0	(x-) 10,700	(x-) 10,700	(x-) 100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15,233	(x-) 20,000	(x-) 4,767	(x-) 31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	
사회보장적수혜금(지방재원)	○ 명절위문비 10,000원*107명*3회	=	3,210천원
	○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15,000원*107명*2회	=	3,210천원
	○ 하계수련회비 40,000원*107명	=	4,280천원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20,000,000원	=	20,0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의 사회적응 여건 조성 및 자립의지 고양

□ 사업근거
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7조(보호시설의 설치)
- 여성·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3. 1~12월
- 지원대상 :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(7개소) 입소자
- 사업의 주요내용
 -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를 위한 명절 위문비 등 지원
 -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동반자녀 양육비(입학금, 수업료 등) 지원

□ 추진경위

-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지원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내역 확대 (2017)

□ 2023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0,700	
계획수립	2023.01~2023.02	0	계획 수립

사업운영	2023.01~2023.12	30,700	입소자 지원
결과보고 및 정산	2024.01~2024.03	0	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0년도	○ 명절 위문비(설,추석,연말), 하계수련회비, 춘계부식비, 김장비 지급(105명 지원)
2021년도	○ 명절 위문비(설,추석,연말), 하계수련회비, 춘계부식비, 김장비 지급(105명 지원)
2022년도	○ 명절 위문비(설,추석,연말), 하계수련회비, 춘계부식비, 김장비 지급(105명 지원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